

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규칙 [목적차로]

제정 2012. 10. 05.

개정 2015. 04. 27.

개정 2024. 06. 27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,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에 의해 징수한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(이하, “수수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은 수수료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이 규칙 또는 수수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3조(목적사업)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.

1.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
2.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·진흥을 위한 사업
3. 게임산업 전반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연구·조사
4. 경품용 상품권 관련 사후관리 사업
5. 기타 위 각 호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업

제 2 장 수수료 운영위원회
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진흥원은 수수료의 사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수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06.27.>

1. 진흥원의 수수료 사업 업무수행 부서 본부장 1인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무과장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2. 게임문화산업 및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, 당해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대리인을 <별지 제2호>의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궐위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사임,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 상실 등으로 궐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또는 해임 할 수 있다.

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

3.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
4. 기타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⑥ 위원회의 간사는 수수료 사업 업무수행 부서의 팀장이 되며, 회의의 의안·회의록·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수수료 활용 사업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2. 수수료 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수수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이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한 것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과반수이상인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거나, 위원장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진다. <개정 2015.4.27.>

②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5.4.27.>

③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위원장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써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<별지 제1호>의 서식으로 서면결의를 통지한다. <개정 2015.4.27.>

제9조(의결 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본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불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내지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.

제10조(수당 지급 등)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다만,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수당 등의 비용지급에 대한 기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비밀의 유지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·의결 사항 중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수수료의 관리 및 회계 등

제12조(재원) 수수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경품용 상품권 발행 수수료 및 이자수입
2.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활용 사업 및 업무로 인한 기타수입

제13조(회계연도) 수수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수수료 사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수료 사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수수료 사용계획
2. 수수료 관리·운용방법
3. 기타 위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진흥원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수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수수료 사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결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15조(수수료 관리·운영) ① 수수료는 사업목적과 공익에 맞게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진흥원은 수수료 관리 문서를 작성, 비치하고 수수료관리 및 운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수료의 집행) 수수료 사용계획에 따른 수수료 집행 시 이 규칙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 4 장 보 칙

제17조(업무수행) ① 진흥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활용 목적사업,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수료에서 충당한다.

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의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6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에 재직 중인 위원부터 적용한다.

<별지 제1호>

서면결의 통지서

귀하

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안건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.

의안번호	제 목
제 호	
제 호	
제 호	
제 호	

- 별 첨 : 1. 안건 1부.
2. 서면결의서 1부. 끝.

년 월 일

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

(별 첨)

서 면 결 의 서

제 회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 정기(임시) 회의 부의안
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.

의안번호	제 목	결 의		의 견
		찬 성	반 대	
제 호				
제 호				
제 호				
제 호				

년 월 일

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 위원 :

(서명)

<별지 제2호>

위 임 장

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의 대리인이 귀 진흥원 제 회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 정기(임시) 회의에 대리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

대 리 인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20 년 월 일

위 임 자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(인)

한국콘텐츠진흥원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
위원장 귀하